

중대재해 사례

1

이동식 계단에서 떨어짐



재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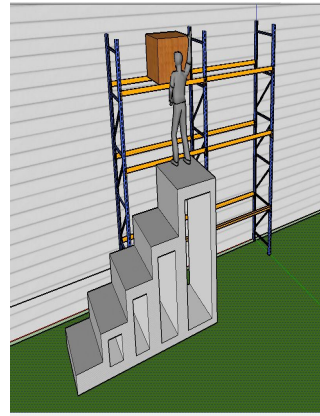
2016.12.09.(금) 16:45경 ○○시 소재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의 자재창고 내에서 이동식 계단을 이용하여 적재대 최상층(높이 2.8m)의 자재를 내리던 중 계단에서 떨어져 병원 후송 후 치료 중 2017.02.03. 16:40경 사망한 재해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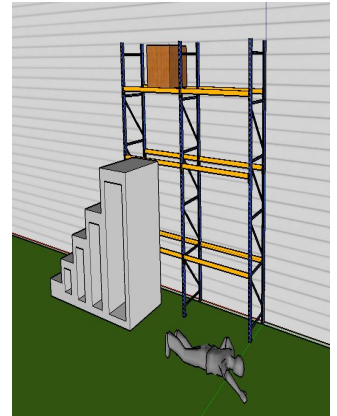
사고사건



[사진1] 재해발생 이동식 계단



[사진2] 재해 상황도(추정)



재해발생상황

● 작업현장 상황

- 당 사업장의 자재창고 내부 적재대 간의 간격이 약 1.3m로 좁아 지게차의 진입이 어려워 팔레트를 이용한 적재는 불가능한 상태이며, 적재대의 높이는 약 2.8m로 이동식 계단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실시함
- 당시 사용된 이동식 계단은 폭 65cm, 높이 1.8m 규격의 5단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상단의 발판은 65×30cm이고 바퀴에 스톱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양측면 및 최상부에 안전난간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

● 재해자의 행동상황

-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짐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이동식 계단을 이용하여 적재물 운반작업을 수행하던 중 몸 균형을 잃고 이동식 계단에서 떨어져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함



재해발생원인

- 이동식 계단의 양측면 및 최상단에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
- 이동식 계단의 최상단 넓이가 좁아 공간의 제약으로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
-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함

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이동식 계단의 양측면 및 최상단에는 떨어짐방지를 위한 높이 90cm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
- 이동식 계단의 최상단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바닥면의 폭을 40cm이상 확보하여야 함(권고)
- 떨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바르게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함